

학생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7.01

개정 2022.02.28

개정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40조의3에 따라 학생들의 집단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게 교내·외 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규정은 학생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안전한 학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대학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이와 유사한 행사는 신입생과 재학생 등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대학 측이 주관, 적용하여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한다.

②대학본부, 각 학과(부),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연수 시에 적용하여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한다.

제5조(승인 신청 등) ①제4조에 따른 학생활동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활동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학생활동 주관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학생활동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2.10.4.>

2. 미 승인된 학생활동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참여 학생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학과(부)장은 교외활동 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규수업 결손과 보강에 관한 사항
2. 불필요하거나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3. 인솔교수 참여 여부 및 안전관리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과(부)장은 학생활동 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 및 검토서류 등의 사본 1부를 학생

복지팀으로 제출하여 학생단체보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제6조(인솔교수의 의무) 인솔교수는 교외활동에 관한 학생지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2. 교외활동 승인사항 준수와 비상연락체계 확인
 3.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에 따른 조치와 학생복지팀에 즉시 상황 통보
- <개정 2022.10.4.>

제7조(준수사항) 교내·외 집단연수나 각종행사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4. 행사(계약) 전 답사 점검에 관한 사항
5.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6. 인솔교수 참석과 필요 시 교직원 동행

②교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수업방해 및 심리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분위기 조성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지 않은 장소로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 예방 점검) 학생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활동승인신청서

행사명				
학과명 (단체명)		행사장소 (지명)		
행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행사내용				
대표학생	학과(부)		학년/학번	
	연락처		성명	(인)
인솔자 (직 · 성명)				
참가인원	총 명			
일정 및 경로 (필요 시 별지첨부)				
행사기간이 수업과 겹칠 경우 교무처장의 사전승인 요함			확인	
안전교육 이수			확인	
협조사항				
우송정보대학 총장 귀하				

	담 당	팀 장	본부장	부총장	총장
결 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적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학생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2. 숙소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 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3. 화재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